

#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지침 [ 2009. 6. 12 ]

- 훈령 제54호
- 일부개정 2011. 6. 17 예규 제 8호
- 일부개정 2013. 11. 8 예규 제10호
- 일부개정 2015. 7. 1 예규 제14호  
(제명개정)
- 전부개정 2018. 4. 13 예규 제19호
- 일부개정 2018. 12. 14 예규 제21호
- 전부개정 2020. 10. 30 예규 제24호  
(제명개정)
- 일부개정 2021. 11. 5 예규 제26호
- 일부개정 2022. 12. 29 예규 제29호  
(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등 일부개정예규)
- 일부개정 2022. 12. 29 예규 제3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준비시간 공제) 다목적강당의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1시간 이내의 사전 준비시간을 사용료 산정 시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조(수입금의 처리) ① 수입금출납원은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사용료 등 수납한 현금은 수납일 다음날까지 증평군 휴양랜드사업소(이하 “휴양랜드사업소”라 한다) 수입금출납원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일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수입금 중 예약취소 반환금, 부가가치세, 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시설 사용료 확정금액을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증평군 금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가가치세의 납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휴양촌 및 캠핑공원 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해당 시설의 사용료 확정금액 징수결정 후 즉시 휴양랜드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이체된 부가가치세는 수입금출납원이 일괄하여 국세청에 신고한다.

제5조(재료비)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재료비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부대시설·장비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이용) ①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이용객 중 1박 이상 숙박시설 이용객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휴양촌: 다목적 운동장, 탁구대, 원두막 등
2. 휴양림: 다목적 구장

② 체험 프로그램 이용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회 이용객을 10명 내지 15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12. 29>

제7조(예비객실 및 우선사용객실의 운영) ① 예비객실은 숙박시설의 10% 이내에서 지정·운영하며, 황토집·별무리하우스의 각 1실로 한다.

② 당일까지 사용계획이 없는 예비객실은 당일 현장 판매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별 우선사용객실 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일반 예약일 7일 전부터 사용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

1. 군민우선사용객실: 숲속의 집 2동, 황토집 2동, 별무리하우스 4실
2. 산림복지바우처 이용자 우선 사용객실: 숲속의 집 1동, 별무리하우스 1실

제8조(이용객의 행위 제한) ①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야영 및 음주
2. 고성방가
3. 기물 또는 비품 파손
4. 풍등, 폭죽 등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화성물질 사용
5. 정치 또는 종교 홍보 행위
6. 관리자의 사전허가 없이 상업적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7. 반려동물 동반 입실(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8. 그 밖에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불편,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

②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 관리자는 이용객이 제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즉시 시설

이용중지 또는 퇴소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 ①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당직근무는 공무원이 하되, 근무인원 부족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인력 및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휴양촌: 일직 1명, 숙직 1명

2. 휴양림: 일직 2명, 숙직 1명

③ 휴양촌 숙박시설 이용객이 없는 경우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예약 등 전화 상담은 휴양림 근무자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1조에 따른 휴무일에는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체험시설 근무일) ① 체험시설(산림레포츠 시설, 좌구산 숲 명상의 집, 별천지 숲 인성학교) 근무자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 5일을 근무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일은 체험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휴무일의 지정) 좌구산 휴양랜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18시부터 휴무일로 한다.

1. 1월 1일

2. 설·추석 연휴

3. 시설의 개보수일

4. 산림레포츠 시설, 명상의 집의 경우 매주 월요일. 다만, 공휴일과 겹칠 경우는 그 다음 날을 휴무일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휴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부칙(2020. 10. 30 예규 제24호 전부개정)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5 예규 제26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지침

부칙(2022. 12. 29 예규 제29호, 위원회 규정 정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등 일부개정예규)

이 예규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예규 제30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좌구산 캠핑공원 이용수칙

좌구산 캠핑공원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이용객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1. 입장 및 퇴소

- 캠핑장의 이용시간은 입실한 날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며, 다음 예약자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2. 시설 사용료

-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 3. 시설 이용

- 반드시 배정된 시설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시설 파손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 캠핑공원 안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1면당 텐트 크기는 6인용 기준입니다.

### 4. 차량 이용

- 캠핑장 내에서는 서행하며, 반드시 정해진 차량진행 방향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가능한 자동차 이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1면당 주차가능 차량대수는 1대입니다. 그 외 차량은 공원입구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소 음

- 22:00부터 07:00까지는 정숙 시간이므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쓰레기 및 폐수 처리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7. 유실 또는 피해

- 이용객 소유물의 분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보관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금지행위

- 가. 지정장소 외에서 화기 사용은 금지되며, 캠핑공원 전 지역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
- 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 홍보행위
- 다.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는 상업적인 홍보 및 물품의 판매
- 라. 음주 및 고성방가 행위
- 마. 캠핑장내 세차
- 바. 반려동물 동반 금지

### 9.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재난으로 위급하거나 피난할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공원 이용 수칙을 어기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안내 및 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강제 퇴장조치 될 수 있습니다.

[별표 2] <개정 2022. 12. 29>

좌구산휴양랜드(체험시설) 체험 재료비

(단위: 원)

시설명	프로그램	기준	재료비	비고
좌구산 숲 명상의 집	공예체험	자연물만들기	3,000~5,000	
		우드버닝	5,000~10,000	
		우드버닝(빵도마)	15,000	
		하바리움	10,000~15,000	
		방향제	13,000	
		나전칠기	10,000	
		스칸디아모스	10,000	
		목공예	5,000~15,000	
		원예치유	5,000~15,000	
	천연염색체험	손수건(소)	3,000	
		손수건(중)	5,000	
		손수건(대)	7,000	
		인견 손수건	10,000~15,000	
		인견 스카프	25,000	
	액자만들기체험	소	5,000	
		중	10,000	
		대	15,000	

[별지 서식]

## 숲속 모험시설 이용 동의서 및 안전수칙

(앞면)

NO. _____	책임자: _____
<p>※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기재하신 고객님의 모든 정보는 숲속 모험시설 운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p>	
<p><b>□ 시설 이용제한</b></p> <p>○ 키즈코스(7세~13세) : 신장 110cm 이상                  ○ 짚라인(7세 이상) : 신장 110cm 이상, 몸무게 25kg이상 100kg이하                  ※ 음주자, 임신부,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자는 이용할 수 없음.</p>	
<p><b>□ 유아/어린이/13세 이하 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b></p> <p>1. 본인은 아래에 기록된 유아, 어린이 또는 13세 이하 청소년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의 부모 또는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로서 좌구산 자연휴양림의 숲속 모험시설 놀이 활동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참가자의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본 이용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참가자 보호자의 허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보호하는 모든 참가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p> <p>2. 본인과 참가자들은 안전지도자의 사전 시설 이용 교육과 이 서약서의 안전규칙 및 권고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카라비너와 트롤리로 이루어진 하네스 및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항상 착용하고 참가자들이 숲속모험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p> <p>3. 본인은 숲속모험시설의 활동 시설이 공중 장애물코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부상의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p> <p>4. 본인은 참가자들과의 시설 이용 중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가이드없이 활동하는데 동의합니다.</p> <p>5. 만일 이용자에게 직·간접적인 사고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증평군 휴양랜드사업소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증평군 휴양랜드사업소의 과실이나 시설의 하자로 발생하는 개인의 사고나 손해는 제외함.</p> <p>6. 본인은 참가자들이 현재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음을 인증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관리자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7. 개인의 변심으로 인한 체험 취소나 중도 포기의 경우에는 참가비를 환불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동의합니다.</p> <p>본인은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로서 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재된 내용에 동의합니다.</p>	
① 이름            나이    세 ② 이름            나이    세 ③ 이름            나이    세 ④ 이름            나이    세 ⑤ 이름            나이    세	⑥ 이름            나이    세 ⑦ 이름            나이    세 ⑧ 이름            나이    세 ⑨ 이름            나이    세 ⑩ 이름            나이    세
보호자 이름 _____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_____ 서명 _____	
체험일자 20 . . .	
증평군 휴양랜드사업소장	

(뒷면)

**▣ 안 전 수 칙 ▣**

본 활동은 동반 및 단체 활동이 아니며, 독립적인 개인 활동입니다.  
공중활동은 위험하며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부상까지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본 활동에 앞서 안전수칙을 모두 숙지하고 안전요원의 안전지시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활동은 안전수칙 및 안전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상, 부상 및 사망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만일 이 책임이나 위험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코스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안전수칙】**

**□ 키즈코스**

- (1) 본 시설은 보호자동반 사항은 의무이며 이용자에게 안전사항을 책임진다.
- (2) 본 시설은 한명의 이용자가 한 게임 구간을 마치면 다른 이용자가 게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
- (3) 본 시설은 도착지에서 다시 출발지로 거꾸로 되돌아 올 수 없다.

**□ 줘라인**

- (1) 트롤리에 카라비너를 모두 완벽히 걸고 안전요원이 지시한 출발자세로 도착지점까지 유지한다.
- (2) 이전 이용자가 게임구간을 완전히 벗어나서 도착 플랫폼(정거장)에 도착한 후에 다음 이용자가 출발 할 수 있다.
- (3) 줘라인 하강 시 손을 절대로 트롤리 앞에 두거나 와이어를 잡지 않는다.
- (4) 슬리퍼 및 치마착용 금지하며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야 한다.

**【비이용자의 주의사항】**

줘라인 활동지역, 플랫폼(정거장)과 게임구간 도착구간 밑에 서 있거나 지나다니는 것을 삼가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책임】**

- (1) 숲속 모험시설 이용 시 개인 소지품의 손상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2) 숲속 모험시설 이용 시 현기증, 불편함 및 가벼운 상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정거장) 등의 일부 구간에서 이용자 스스로 이용을 중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요원의 구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의 상황에 대한 사전 고지없이 이를 감수하고 시설을 이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 (3) 참가조건 거짓신고, 안전수칙 미 준수,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개인에게 있습니다.